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4(개인신용정보 전송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영 제28조의4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전송에 관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논의를 거쳐 영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등을 정한다.

②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의 산정기준 등을 마련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비용은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하는 데에 드는 적정원가를 보상할 수 있는 수준·방식으로 산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적정원가는 개인신용정보 전송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운영비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3. 필요한 경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특성,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4. 비용 산정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제적 또는 경제외적 사유의 발생으로 적정원가의 현저한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증감요

인을 반영하여 새로이 비용 산정을 할 수 있다.

③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구체적 비용 항목, 비용 청구의 방식·시기 등에 대한 내부규약을 마련하여 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협의회 논의를 거쳐 금융결제원 등 결제·정산 관련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비용의 정산을 대행하게 하거나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제28조의3에 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22조의4제7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신용정보회사등의 정보집합물 간의 결합, 가명처리 또는 익명 처리에 관한 지원 업무를 말한다.

⑦ 영 제22조의4제8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신용정보회사등의 가명처리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등의 지원 업무를 말한다.

제28조의3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를 제8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한다.

별표7 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데이터전문기관의 임원이 다음을 충족할 것.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1) 최근 5년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법 제2조제1호의4나목에 해당하는 정보가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금융관계법령"은 "금융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본다

별지 8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결합 신청서

<b>② 결합신청유형</b>	<input type="checkbox"/> 결합 데이터 제공 <input type="checkbox"/> 결합 데이터 이용 <input type="checkbox"/> 결합 데이터 제공 및 이용	
<b>③ 결합신청기관 (제공, 이용)</b>	기관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명
	담당자(성명직함)	연락처(전화, e-mail)
<b>④ 전체 결합 신청기관</b>	총 기관 수 [ ]개 기관(결합 데이터 제공·이용자 모두 포함)	
	기관명	
<b>⑤ 지원요청사항</b>	<input type="checkbox"/> 결합신청에 필요한 가명처리 지원(결합전문기관만 해당)	
<b>⑥ 이용기관명</b>		
<b>⑦ 결합데이터 이용목적</b>	<input type="checkbox"/> 통계작성 (상업적 목적 포함) <input type="checkbox"/> 연구 (산업적 연구 포함) <input type="checkbox"/> 공익적 기록보존 등	
<b>⑧ 세부 이용목적</b>		
<b>⑨ 데이터제공형태</b>	<input type="checkbox"/> 가명정보	
	<input type="checkbox"/> 결합키 삭제 <input type="checkbox"/> 결합키 대체	<input type="checkbox"/> 익명정보
<b>⑩ 추가 서비스 신청</b>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주기적·반복적 결합 <input type="checkbox"/> 사전결합률 신청(결합률 확인)	
	<input type="checkbox"/> 샘플링 결합(가명정보 추출) <input type="checkbox"/> 모의결합(결합전문기관만 해당)	
	<input type="checkbox"/> 원격분석시스템 사용	
	- <input type="checkbox"/> 추가 가명처리 지원(결합전문기관만 해당)	
	- <input type="checkbox"/> 결합정보 분석 지원(결합전문기관만 해당)	
	-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보호 교육(결합전문기관만 해당)	
<b>⑪ (데이터전문기관)</b>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합을 신청합니다. <b>(결합전문기관)</b>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1항, 제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3제1항, 제3항, 제6항, 「가 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제3항에 따라 결합 및 반출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span style="font-size: small;">(⑫) 신청인</span> <span style="font-size: small;">(서명 또는 인)</span> <span style="font-size: large;">(전문기관명 or 결합전문기관명)장 귀하</span>		
<b>⑬ 첨부서류</b>	1. [공통]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공통]결합 대상 가명정보에 관한 서류(전체 항목명, 가명처리 대상 항목명, 가명처리 내역 등) 1부 (결합정보 이용자에 한함, 결합전문기관 양식) /정보집합률 명세서 1부(데이터전문기관 양식) 3. [공통]반출 정보의 안전조치계획 및 이를 증빙 할수 있는 서류 1부[결합전문기관 양식] / 결합정보 관리환경 및 이행 확약서 1부[데이터전문기관 양식] 4. [결합전문기관]결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데이터전문기관]결합의뢰기관 동의서 1부(필요시, 이용기관이 아닌 결합의뢰기관이 제출)	


##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23조의4(개인신용정보 전송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영 제28조의4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전송에 관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논의를 거쳐 영 제18조의6제11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등을 정한다.</u></p> <p><u>②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의 산정기준 등을 마련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u></p> <p><u>1. 비용은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하는 데에 드는 적정원 가를 보상할 수 있는 수준·방식으로 산정한다.</u></p> <p><u>2. 제1호에 따른 적정원가는 개인신용정보 전송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운영비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다.</u></p> <p><u>3. 필요한 경우 본인신용정보관리 회사의 특성,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u></p>

려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  
를 감액할 수 있다.

4. 비용 산정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제적 또는 경제 외적 사유의 발생으로 적정원가의 현저한 증감이 있을 경우에  
는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새로이 비용 산정을 할 수 있다.

③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구체적 비용 항목, 비용 청구의 방식·시기 등에 대한 내부규약을 마련하여 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협의회 논의를 거쳐 금융결제원 등 결제·정산 관련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비용의 정산을 대행하게 하거나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제28조의3(데이터전문기관) ① ~

⑤ (생략)

<신설>

제28조의3(데이터전문기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영 제22조의4제7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신용정보회사등의 정보집합물 간의 결합,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에 관한 지원 업무를 말한

## <신 설>

### ⑥ ~ ⑪ (생 략)

다.

⑦ 영 제22조의4제8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신용정보회사등의 가명 처리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등의 지원 업무를 말한다.

### ⑧ ~ ⑬ (현행과 같음)

## <별표7>

### 1. 인력 및 조직

나. 데이터전문기관의 임원이 다음을 충족할 것.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1) 최근 5년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법 제2조제1호의4나 목에 해당하는 정보가 등록되는 사실이 없을 것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금융관계법령”은 금융관

## <별표7>

### 2. 인력 및 조직

나. 데이터전문기관의 임원이 다음을 충족할 것.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1) 최근 5년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법 제2조제1호의4나 목에 해당하는 정보가 등록되는 사실이 없을 것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금융관계법령”은 금융관

계법령 및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본다.

계법령 및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본다.